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이 타시도 보다 적게 지급됨으로 인한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4.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단,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 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